

2012년 승강기 표준보수료

□ 표준보수료
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4(표준보수료)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,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보수료

□ 표준보수료 테이블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별도)

기 종				기 준 (표준승강기)	기본 보수료	할 증		현장점검 시간	
						적용	비고		
엘 리 베이터	승 객 용	로 프 식	교류	VVVF제어	공동주택, 승객용, 15층, 60m/min, 900kg	176,000	2,500	층당	2.17
			직류	기타	공동주택, 승객용, 15층, 60m/min, 550kg	167,000	2,500	층당	1.70
		유압식	기어	업무시설, 승객용, 10층, 105m/min, 1150kg	191,000	2,500	층당	2.51	
			무기어	업무시설, 승객용, 15층, 150m/min, 1150kg	206,000	2,500	층당	2.85	
	화물용	유압식		판매 및 영업시설, 장애인용, 2층, 45m/min, 1000kg	169,000	2,500	층당	1.99	
		로프식		공장, 화물용, 2층, 30m/min, 2000kg	161,000	2,500	층당	1.54	
에스컬레이터				판매 및 영업시설, 4m(높이), 1200형	199,000	1,100	m당	2.65	
수평보행기				판매 및 영업시설, 15m(길이), 1200형	205,000	1,100	m당	2.48	
덤웨이터				교육시설, 4층, 20m/min, 300kg	125,000	2,500	층당	0.66	
휠체어 리프트	장애인용 경사형			판매 및 영업시설, 4m(높이), 가이드 로프식	132,000	1,100	m당	0.91	
	장애인용 수직형			공공용시설, 4m, 유압식	143,000	-	-	1.19	

※ 표준보수료는 상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종별 '표준승강기'에 대하여 적용하며, 그 적용에 있어 '승강기 설치현장의 특성', '개별 승강기의 상태', '특수한 계약조건'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[비 고]

1. '표준승강기'는 각 기종별로 표준보수료 산정 당시 국내에 가장 많이 설치된 승강기를 의미함
2.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미만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본 보수료를 적용함
3. 현장점검시간은 노무공수 중 실질적인 자체점검시간(월 1회)을 의미함

[표준보수료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]

1. 표준보수료의 기준
 - 1) 대수 : 1대
 - 2) 보수기간 : 1개월
2. 보수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
 - 1) 자체점검(월 1회) 및 고장발생 시 수리
 - 2)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
 - 3) 정기검사(년 1회) 시 입회 및 사후조치
 - 4) 필요한 기술인력(초급기능사부터 고급기술자까지)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
3. 이 표준보수료는 단순보수(P.O.G)계약을 기준으로 함

[산정 기준]

1. 표준보수료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218(2008.05.07) 및 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.04-160-4(2007.10.12)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산정된 것임
 - 1) 직접인건비는 보수기간, 보수횟수 및 보수인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기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,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(2008.1.1 시행)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함
 - 2)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모품비를 보수업체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
 - 3)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%를 적용함

□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보수료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별도)

구 분	승 강 기 대 수			
	2 ~ 5대	6 ~ 10대	11 ~ 15대	16대 이상
대당 할인보수료(전기종 공통)	25,000	32,000	34,000	35,000

□ 참고사항

이 표준보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 보수인력의 시간당 노임단가는 13,539원으로 초급기술자보다는 높고 고급기능사보다 낮은 정도의 수준에 해당됨

구분	기술 자격 기준	학력 경험 기준
초급기술자	- 기사 자격을 가진 자 -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	- 석사, 학사, 전문대졸, 고졸 3년 이상
고급기능사	-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-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- 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-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	- 기능대졸, 전문대졸 4년 이상 - 고졸 7년 이상 -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-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